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이정현 · 박선원
김정호 · 김종민 · 정혜경
김남근 · 서미화 · 이훈기
조계원 · 김동아 · 양부남
민홍철 · 안도걸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. 또한,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,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·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,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4항 신

설 등).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운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- ⑤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관련 부품의 수급과 기술 지원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정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철도기술의 진흥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철도기술의 진흥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제14조(철도안전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(철도안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운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</u>

④ · ⑤ (생략)	<u>여 관련 부품의 수급과 기술 지원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정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⑥ · ⑦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